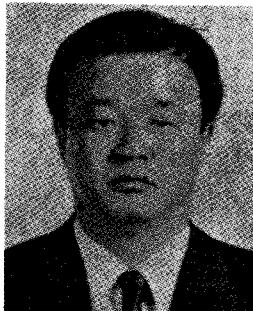


中國 商標制度(1)



宋 晚 鎬
<辨理士>

목 차

1. 근거법률
2. 중국상표법의 목적
3. 상표등록요건
4. 출원원칙 및 요건
5. 심사절차
6. 상표권
7. 상표권자의 보호
8. 중국상표법의 개정방향
9. 1991년도 중국상표관련 통계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1. 근거법률 및 관련기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1982. 8. 23.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회기 통과, 1983. 3. 1. 시행). (이하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세칙(1988. 1. 3 국무원 비준수정, 1988. 1. 13.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포 및 시행). (이하 “상표법실시세칙”)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중앙부서는 국무원산하기관인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이하 “상표국”)으로서 상표출원을 접수, 심사하고 상표공보를 발행하며 상표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있다.

상표국에는 상표평심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가 있어 상표평심안건 즉, 거절사정 불복항고(駁回復審申請), 이의결정불복항고(異義復審申請), 상표분쟁심판(注册商標爭議申請),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注册不當商標裁定申請), 상표등록취소결정 불복항고(不服撤銷注册商標申請), 간신등록거절사정불복항고(續展復審申請), 상표권양도거절불복항고(轉讓復審申請) 등을 처리한다.

또한 지방의 상표등록관련 기관으로는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각 省이나 自治區 등에 설치되어 출원인과 상표국간의 제출서류의 검토, 송부 및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급의 인민법원(人民法院) 등이 있다.

2. 중국상표법의 목적

중국상표법의 목적은 상표행정을 개선하고 상표권을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상품품질에 대한 책임의식의 고취와 업무상의 신용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국가정책상 어떠한 종류의 상품이든지 모두 등록상표(注册商標)의 사용을 필수적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내에서 상품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

3. 상표등록요건

가. 상표의 정의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정선(간선 : 擇選) 및 판매(경소 : 經銷)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등록상표(注册商標)”라 함은 상표국에 의해 등록사정(注册核准)된 후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설명서, 부착물에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상품에 관한 광고, 선전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중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에 의한 등기절차를 마치고 독립적으로 민사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기업(법인)이나 개인기업(個體工商業者), 또는 법인자격을 갖춘 사업단위(事業單位), 혹은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 외국기업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는 당사국간에 맺은 협정,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당사국간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출원하여야 하며(상표법 제9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지정하는 대리기관에 상표등록원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상표법 제10조).

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훈장,

포장, 기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2) 외국의 국가명, 국기, 훈장, 포장, 기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3) 정부차원의 국제기관 등의 기(旗), 표장이나 명칭

(4) 적십자(Red Cross) 또는 터키국기모양의 적색초승달(Red Crescent)의 심볼마크 혹은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5)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명칭이나 도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상품의 품질, 주원료, 효능, 용도, 무게, 수량 또는 형상 등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국가, 인종, 민족의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8) 상품광고를 통해 과장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

(9) 사회주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하거나 국민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상표

상기 이외에도 중국의 행정구역상의 지리적명칭 및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외국의 지리적명칭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단 상표등록출원 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이 유효하다(상표법실시세칙 제6조).

또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일로부터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로 인해 소멸한 상표권소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상표법 제32조).

4. 출원원칙 및 요건

가. 일상표 일출원 주의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상품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유별로 출원하여야 한다.

즉, 상표마다 별도로 출원하여야 하며 만일

같은 상표를 여러 상품구분에 해당되는 다수의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상품이 속하는 상품구분(류)마다 하나씩 출원하여야 한다.

중국의 상품구분은 국제상품분류에 따르고 있으나 그 중 서비스 구분(제37류 내지 제42류)은 서비스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출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의 상표에 관해서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상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 각자는 상표국의 통지에 따라 그 상표의 사용개시일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그 사용개시일이 동일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의 협의진행에 관한 통지일로부터 15 일이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국이 그 문제에 관하여 재정하여야 한다.

다. 지정상품 추가별도출원

등록상표를 동일한 상품구분내의 다른상품(지정상품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출원을 하여야 한다.

라. 출원서류

1개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서(商標注冊申請書)” 1통과 상표견본(가로×세로 : 5cm 이상 10cm 이하) 10매를 첨부하여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상품이 어느 상품구분내에도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체용 약품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후생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약품생산기업허가증” 또는 “약품경영기업허가증”을, 연초제품인 경우에는 국가연초주관기관이 발급한 “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대리인 위임장을 중국어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개인이나 법인을 대리하는 대리권의 범위 및 국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공증, 인증 및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관계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른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를 서로 위임장의 공증 또는 인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외국어로 기재된 모든 서류는 중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상표국에서 접수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5. 심사절차

가. 방식심사

상표국은 출원서류가 접수되면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만일 서류의 방식상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출원서는 출원인에게 반환되며 출원번호가 부여되지 않음은 물론 출원일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출원공고 또는 거절사정

상표국은 출원번호가 부여된 상표등록출원에 한하여 심사한다.

출원상표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타인의 선등록이나 선출원된 상표로서 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初步審定)하고 “상표공보”에 공고한다.

그러나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출원상표에 대

해서는 출원인에게 거절사정통지서(駁回通知書)를 송부하고 그 부분을 당해지방 공상행정 관리기관(原核轉機關)에 송부한다. 외국출원인의 경우에는 지정대리인에게 송부한다.

다. 이의신청절차

상표공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해서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시청서(異議書) 사본 2통을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被異議人)에게 지정기간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당사자 쌍방이 진술한 사실 및 이유를 근거로 하여 재정(裁定)하여야 한다.

지정기간만료일까지 답변서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상표국은 재정할 수 있다.

상표국은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이의신청이 이유없는 것(異議裁定不能成立)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사정(注册核准)을 한 후 상표등록증(商標註冊證)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기된 이의신청이 이유있는 것(異議裁定成立)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국은 이의결정결과(異議裁定通知)를 당사자 및 당해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불복항고(復審), 심판(裁定), 재심의(復議)

(1) 거절사정불복항고(駁回復審申請)

거절사정(駁回)된 상표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거절사정통지(駁回通知)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박회상표복심신청서(駁回商標復審申請書)” 1통과 상표등록출원서원본, 상표견본 10매, 박회통지서를 첨부, 제출하여 복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전에 30일간씩 2번에 걸쳐 기간 연장신청

이 가능하다.

이때 당해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상기 “박회상표복심신청서” 사본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상기 복심신청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 복심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결정으로 출원공고가 결정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상표국으로 환송처리한다.

상표권이전등록신청(轉讓註冊商標申請)에 대한 상표국의 거절결정(駁回轉讓通知)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商標續展註冊申請)에 대한 상표국의 거절사정(駁回續展)에 대하여 불복하는 복심을 신청하는 경우 즉, 박회전양복심신청서(駁回轉讓復審申請書)나 박회속전복심신청서(駁回續展審申請書)에 대한 처리절차도 동일하다.

(2) 이의신청재정불복항고(商標異議復審申請)

이의신청재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재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이의복심신청서(商標異議復審申請書)” 1통을 제출하여 복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전에 30일간씩 2번에 걸쳐 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당해기관에도 “상표이의복심신청서” 사본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상기 복심신청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종국결정 내용을 복심신청인 및 관련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종국결정으로 이의신청재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을 상표국으로 환송처리한다.

(3) 등록취소결정불복항고(撤銷商標復審申請)

등록취소사유(6. 다. 참조)에 해당되어 상표

국이 내린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철소상표복심신청서(撤鎖商標復審申請書)” 1통을 제출하여 복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전에 30일간씩 2번에 걸쳐 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종국결정으로 원래의 상표등록취소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을 상표국으로 환송처리한다.

(4) 상표등록취소심판(注册不當商標裁定申請)

부적법하게 등록된 등록상표(상표분쟁관련 재정신청중인 것은 제외)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注册商標撤鎖裁定)을 청구(申請)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책부당상표철소재정신청서(注册不當商標撤鎖裁定申請書)” 1통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주책부당상표철소재정신청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등록취소를 재정한 경우에는 이 사건을 상표국으로 환송처리하고 재정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상표평심위원회는 당해기관에도 재정결과공고사본을 송부한다.

(5) 상표분쟁심판(注册商標爭議裁定申請)

상표등록권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분쟁대상으로 삼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대상상표가 “상표공보”에 공고된 날부터 1년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쟁의재정신청서(商標爭議裁定申請書)”를 제출하여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쟁의재정신청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등록취소를 재정한 경우

에는 이 사건을 상표국으로 환송처리하고 재정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상표평심위원회는 당해기관에도 재정결과공고사본을 송부한다.

(6) 재심의 청구(復議申請)

등록취소결정을 제외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내린 명령 및 벌금부과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상급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전에 30일간씩 2번에 걸쳐 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한 복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기 복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상기 복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신청이 없거나 복의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7) 일사불신청(一事不申請)의 원칙

등록사정되기전에 이의신청 또는 재정신청이 진행중인 상표등록출원과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이유를 근거로 하는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은 불가하다.

6. 상표권

가.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사정일(注册核准日)로 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해 10년간씩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나. 소멸사유

상표등록권자가 상표국에 “상표주소신청서(商標注鎖申請書)”를 제출하여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상표권은 소

멸된다.

다. 취소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규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록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변경 등록출원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 및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상표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법정기간 3년동안 등록상표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상표법 제30조4항)

(5)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생산되지 않는 상품 또는 품질이 예전보다 조악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 수요자를 기만하는 경우

(6) 등록상표의 표장을 제조, 인쇄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표사용권 설정시(商標使用許可合洞時) 사용권설정서 사본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내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상표등록취소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취소사유 (4)항의 법정기간 3년동안의 상표불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상표국은 등록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상표등록권자에게 지정기간을 정하여 유효한 상표의 사용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라. 상표권의 관리

(1).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商標續展注册申請)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표등록권자는 상표국에 “상표속전주책신청서(商標續展注册申請書)” 1통을 상

표견본 5매 첨부하여 제출하고 상표등록증(商標註冊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등록사정하는 경우에 갱신등록된 상표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2). 상표등록권자 명의변경신청

상표등록권자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상표주체인명의신청서(變更商標注冊人名義申請書)” 1통을 변경내용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상표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권자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등록사정하는 경우에 명의변경된 상표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상표등록권자는 명의변경시 본인의 등록상표 전부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상표등록자 주소변경신청

상표등록권자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상표주체인지지신청서(變更商標注冊人地址申請書)” 1통을 변경내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상표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권자의 주소변경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등록사정하는 경우에 주소변경된 상표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상표등록권자는 주소변경시 본인의 등록상표 전부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상표등록권자의 기타등록사항 변경신청

상표등록권자가 기타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상표기타 주택사항 신청서(變更商標其他注冊事項申請書)” 1통을 변경내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상표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권자의 기타등록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등록사정하는 경우에 기타등록사항이 변경된 상표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상표등록권자는 기타등록사항 변경시 본인의 등록상표 전부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개인이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권 이전등록출원에 대하여 심한다.

(5). 상표권 이전등록출원(注册商標轉讓申請)

상표등록권자가 타인에게 상표권을 양도(轉讓)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受讓人)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당해기관을 경유하여 상표국에 “전양주책상표신청서(轉讓註冊商標申請書)”를 제출하고 상표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양수인의 자격은 상표법실시세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개인이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권 이전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등록사정하는 경우에 이전등록된 상표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상품이 “인체용약품, 연초제품”인 경우에는 국가관련주관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권자는 상표권 이전등록출원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전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본인의 등록상표에 대해서도 함께 상표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상표등록증 재발급신청(補發商標註冊證申請)

상표등록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상표국에 “보발상표주책증신청서((補發商標註冊證申請書)”를 상표견본 5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방의 일간신문에 “遺失聲名”을 하여 그 유실성명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파손한 경우에는 파손된 상표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 상표사용권설정(商標使用許可合同)

상표등록권자는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권 설정자(許可人)는 지정기간내에 허가인이 소재하는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

에 참고용(存查用)으로 “상표사용허가합동서(商標使用許可合同書)” 부분을 제출하고 사용권자(被許可人)는 상표법실시세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체용 약품 또는 연초제품을 상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관련주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상표국에 보관용(備案用)으로 “상표사용 허가합동서” 사본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용권자(被許可人)의 자격은 상표법 실시세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야 한다.

사용권설정자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감독하고 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사. 상표사용자의 의무

상표사용자(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는 상표사용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 기관은 상표관리를 통해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상표의 표기는 “注册商標”와 같이 등록표시를 하거나 “注” 혹은 “R”과 같이 등록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등록표시 또는 등록부호를 상품에 직접 표기함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상품에 부착하는 부착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아. 상표권의 포기(商標注鎖)

상표등록권자가 등록상표를 포기(注鎖)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주소 신청서(商標注鎖申請書)” 1통을 제출하고 상표등록증도 반납하여야 한다.<계속>